

의안번호	제853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3월 4일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호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3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4일
발의자 : 김호경, 이태훈,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반면 사고 피해자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에 어려워 사고 후 대응과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이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교육과 법률·심리 상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바. 위탁 및 협약체결·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급발진 의심 사고”란 운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동차가 스스로 작동하여 급가속했다고 의심되는 현상으로 인한 사고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과정
2.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비한 운전 요령
3.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4.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지원)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충청북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률상담
2. 심리상담
3. 그 밖에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도지사는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차 안전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약체결 및 협력) 도지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시행 2024. 8. 17.] [법률 제19673호, 2023. 8. 16., 일부개정]

-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제작 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11. 5. 24., 2013. 3. 23., 2015. 1. 6., 2015. 12. 29., 2017. 1. 17., 2020. 2. 4., 2021. 4. 13., 2024. 1. 16.>

1.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2.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 ④ (중략)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및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항에 따른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을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2. 4.>

⑥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화재,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 2. 4., 2020. 6. 9., 2024. 2. 13.>

⑦ ~ ⑬ (후략)

□ 제조물책임법

[시행 2018. 4. 19.] [법률 제14764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본조신설 2017. 4. 1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비용추계 첨부 제외 관련 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 사 유

- 「충청북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출예산이 없고
-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교육 및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